

제주지방법원 2024. 10. 29 선고 2023가단599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제주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

피 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덕규

변 론 종 결 2024. 5. 28.

판 결 선 고 2024. 10. 29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15,417,282원과 그중 14,987,908원에 대하여는 2023. 3. 16.부터 2023. 6. 7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A과 피고 B가 2022. 8. 3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15,417,282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 피고 B는 원고에게 15,417,2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 A에 대한 청구

별지 ‘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’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,417,282원과 그중 14,987,908원에 대하여는 2023. 3. 1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. 6. 7.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원인에 관하여

갑 제8호증의 기재, 사단법인 C,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무자력이던 피고 A이 2022. 8. 31.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

피고 B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나 제10,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

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, 피고 B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.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① 피고 B는 공인중개사가 낸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. 이에 비추어 보면, 피고 A과 피고 B는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.

② 매매대금은 2억 2,0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1,500만 원이었으나 주변시세에 비하여 특별히 비싸거나 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, 피고 B는 매도인인 피고 A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.

③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뒤 이 사건 토지에서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임재남

별지